

中國 國有企業의 準民營化 現況 및 展望

朴永日¹⁾

1. 머리말
2. 中國 國有企業의 準民營化 現況 및 特徵
3. 準民營化의 主要 內容과 方法
4. 準民營化의 成果 및 限界
5. 맺음말

1. 머리말

지난 9월 18일 폐막된 共產黨 第15次 全國代表大會(일명 ‘15全大’)에서 향후 5년간 중국의 성장을 이끌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과제로 국유기업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는 그간 중국경제의 근간을 이루어 온 국유부문이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의의이이다.

그동안 중국 國有企業의 改革에 있어 진정한 意味의 民營化 즉 完全 民營化는 小型 國有企業에 한정되었다. 중대형 국유기업의 개혁은 기업의 形式的인 요건 즉 “所有權 移轉”(민간단체 혹은 개인에게 이전) 없이 “企業 支配의 主體 移轉”만 추진되어 옴으로써²⁾ 중대형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완전민영화라기 보다는 “準 民營化(혹은 部分的 民營化)”단계에 그친 상태였다. 이러한 중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 부진은 자연스럽게 부실로 이어졌다.

중국은 연평균 9% 내외의 고도성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부문은 오히려 비효율이 심화되면서 적자폭이 확대됨과 동시에 낮은 성장을 유지해왔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국유기업 가운데 적자경영기업의 비중은 1993년 31.8%에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1996년에는 45%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심화와 적자폭 확대에 따른 부실은 결국 경제 전반의 부실로 이어져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중국은 금번 ‘15 全大’를 통해 좀더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을 천명한 것이다.

과거 중국 경제개혁의 기초가 기존의 것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점진적 개혁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향후 國有企業의 民營化 方向 또한 기존의

1) 中國 延邊大 教授 및 朝鮮問題研究所 研究員
 2) 姜信逸, <公企業의 民營化에 관한 研究>, KDI. 1988

개혁방식을 기본으로 보완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 바,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그동안 ‘準民營化’방법과 내용을 고찰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추진될 중국 國有企業의 完全民營化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中國 國有企業의 準民營化 現況 및 特徵

가. 國有企業 改革 推進 過程과 背景

중국은 현재 計劃經濟에서 市場經濟體制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國有企業은 여전히 計劃經濟의 틀안에 두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따라서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국유기업 개혁과정은 지난 1992년 中國 共產黨 14次 全國代表大會(‘14全大’)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放權讓利式 改革과 이후의 現代企業制度 구축이라는 두단계로 대별할 수 있다. 放權讓利式 改革이란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기업에 점차 위임하고, 이와함께 정부에 전액 상납되던 기업이익도 부분적으로 기업에 유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혁방식으로는 구체적으로 生產責任制(1978~’84년), 利改稅制(1984~’86년), 請負經營責任制(1987~’91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80년대의 개혁은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기업자체가 부여받은 경영 자주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1992년 7월 ‘國有企業 經營 메카니즘 轉換條例’, 1993년 12월 ‘公司法(會社法)’ 등을 공포, 기업의 법적 지위, 행정에 대한 관계를 좀더 명확히 하는 현대기업제도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기업의 경영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민간에 이양하는 과감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1992년 이후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現代企業制度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株式制 및 株式合作制³⁾ 개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나. 株式制 改革의 推進 過程과 現況

株式制 改革이 본격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시작은 1980년대 중반부터였다. 1983년 深圳 寶安聯合投資公司가 공개적으로 株式을 발행하였으나 주식회사로 전환하지는 않았으며, 이듬해인 1984년 7월 北京에서 중국 최초의 주식회사인 天橋百貨股分(株式)有限公司가 설립되었다. 公司 설립 당

3) 株式制의 일환으로 농촌의 중소기업(鄉鎮企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980년대 중반 시작된 제도로 農村 集體企業의 자산을 株式化하여 구성원 또는 참여농가에 배분하는 제도를 말함. 1993년 이후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으며, 농촌중심의 株式合作制가 도시지역의 중소기업에 까지 확대되었음. 주식합작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구성원의 현금출자도 허용하고 나아가 다른 기업이나 개인의 출자도 가능한데다가 기업규모도 작아 대형 국유기업과는 달리 주식제로의 전환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음.

시 原資産을 모두 國家株⁴⁾로 전환하고 300萬元의 주식을 공모발행함으로써 국가주 51%, 법인주 26%, 외자주 20%, 개인주 3%의 지분구조를 갖게 되었다. 동년 11월 上海에서 두 번째 주식회사인 上海飛樂音響公司(법인주 35%, 개인주 65%)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이러한 주식제 형태의 기업이 武漢, 重慶, 瀋陽, 深圳 등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주식제 개혁 초기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個人株에 원금보증, 이자지급, 이익배당을 규정하였고, 일부 기업에서는 自由로운 脫退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 때의 株權은 規範的 의미의 주권이 아니라 기업채권 보다 유리한 단순한 채권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다.

1986~1987년에는 초보적이거나 증권시장의 형성⁵⁾과 함께 중국 정부는 주식제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제정 및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주식제 기업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1986년 12월 국무원은 <기업개혁을 심화시켜 기업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간의 규정(關於深化企業改革, 增強企業活力的若干規定)>을 공포, 각 지방에서 일정조건이 구비된 中大型 國有企業을 선택하여 株式制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1987년 10월 개최된 中國 共產黨 13차 全國代表大會 보고안건에서 株式制 形式은 國家控股(支配株)와 地域, 部門, 企業들의 株式參與 및 개인주식 구매를 포함한 사회주의기업의 하나의 조직형식으로 계속 시행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公有制도 全民所有制, 集體所有制 외 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제를 합쳐 설립한 混合型 公有制企業, 그리고 각 지역, 부문, 기업사이에 相互 지분참여 형식의 公有制企業 등 여러형태로 발전시킬수 있다고 표명하여 株式制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발표가 있는 후 전국적으로 株式制 企業數가 크게 증가하였다.

1988~1990년 중국정부는 과열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경제조정정책(治理整頓)을 추진함에 따라 주식제 개혁도 다소 주춤하였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나타난 법제, 관리방법, 감독기구의 미비에 따른 주식과 채권 사이의 구별 모호, 국유자산에 대한 저평가, 집체자산의 개인자산으로의 전환 그리고 비교적 높은 주식배당율의 사전 규정 등 주식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대폭 손질하였다. 1990년 5월 國家經濟體制改革委員會는 기업 상호간 주식참여는 적극 시행하되 從業員持株制는 우선 上海와 深圳에 한정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治理整頓 기간중 주식제 개혁이 다소 침체되었다.

그러나 1992년 초 덩소평의 '南巡講話'를 계기로 기업개혁 차원에서의 주식제가 다시 활발히 진행되었다. 1991년까지 3,000여개에 불과하던 주식제 기업수가 1993년 말에는 7,000여개로 무려 2년만에 두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上海와 深圳 두곳에 개설된 증권거래소를 통해 상장기업은 1991년 15社에 불과했으나 1995년 말 상장기업은 323社에 달하며, 발행총액은 765億元(이중 공개발행된 것은 302億元), 시가총액은 4,474億元(약 418억달러)로 GDP의 6.0%에 달했다. 1996년 말에는 상장기업 529사, 발행

4) 중국기업의 주식발행 형태는 소유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國家株, 法人株(集團株), 外資株, 個人株라는 네가지 종류로 나눔.

5) 1985년 10월 중국 최초의 증권시장이 深圳(深圳特區 證券公司)가 주식거래(중개)에 형성되었으며, 이듬해인 1986년 上海(中國工商銀行 上海信託投資公司 靜安證券部)에 주식교역 창구 설치)에서도 나타남.

총액 1,100億元으로 늘어났고 시가총액은 약 1兆元(1,204억달러)로 동년 GDP의 약 14%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같은 추세라면 2000년까지 상장기업은 1,000개 이상에 달하고 시가총액은 2兆元(1996년 환율로 약 2,409억달러)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⁶⁾

다. 株式合作制 企業의 現況및 特徵

(1) 農村 株式合作制 企業

農村에서 株式合作制 企業은 최초 80년대 중반에 山東省 濰博, 浙江省 溫州, 江蘇省 鹽城, 廣東省 寶安, 安徽省 阜陽 등지의 鄉鎮企業에서 시작되어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993년 말 현재 전국 農村株式合作制企業은 향진기업 전체의 10%이상을 차지하며, 경제가 발달한 연해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30%까지 육박하였다. 이중 浙江, 山東, 廣東省의 株式合作制 기업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産業構造面에서 보면 보면 주로 제2, 제3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株主는 대개 鄉鎮企業의 內部 從業員과 기업법인이며, 일부 地域內 농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농촌 주식합작제 기업의 주주구성은 일반 국유기업과는 달리 法人株보다도 個人株가 많다는 것이 특징인데 예를 들면 浙江省 瑞安市 株式制企業 가운데 個人株는 53%를 차지,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都市 株式合作制 企業

都市 株式合作制 기업은 80년대 후반들어 도시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해 왔다. 浙江, 上海, 山東, 등 연해지역의 省, 市정부는 초기 기업설립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株式合作制를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또한 대부분 省, 市에서 株式合作制에 관한 實行方法 및 暫定規定을 制定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도시 지역의 株式合作制를 기업개혁의 일환으로 중요시 여겼다. 그리고 주식합작제 실시 이후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 및 재산권(소유권과 채권 등)관계가 분명해지고 현대적인 기업제도 및 경영기능을 수립함으로써 만성적인 赤字企業이 黑字企業으로 전환되어 企業의 經濟利益이 크게 向上된 것으로 나타났다.

3. 準民營化的 主要 內容과 方法

國有企業의 株式制 改革은 이미 언급한 바처럼 1980년 중반 도입되기 시작한 이래 10여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株式制가 전형적인 자본주의 제도하에서의 기업형태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13企大' 보고에서 "株式制는 社會度와 무관하며, 오직 企業財産의 組織形式이다."라는 말로 株式制가 資本主義에 의한 기업형태라는 인식을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12월 15일 國務院에서 국유기업의 주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조치와 노력이 전개되어 왔으며, 급기야는 지난 9월 12일 개막된 '15企大'에서 "株式制는 자본의

6) 趙顯竣, <中國 國有企業 民營化的 展開와 展望>, 對外經濟政策研究員, 1996.12, 84~85쪽,

(가) 所有權確定과 財産評價

소유권 확정과 관련된 법규는 <기업국유소유권 설정에 관한 잠정규정(企業國有所有權界定暫行規定)>, <국유자산 재산권 설정과 재산권 분쟁처리에 관한 잠정규정(國有資產產權界定和產權糾紛處理暫行辦法)>, <집체기업 국유자산 재산권 설정에 관한 잠정규정(集體企業國有資產產權界定暫行辦法)> 등이 있다. 이에 따르면 국유기업의 주식제기업으로 전환시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돌아감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해 <公司法>은 “國有企業을 株式會社로 전환시킬 경우 국유자산을 低價換算 혹은 低價販賣하거나 個人에게 無償分配하는 것은 禁止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유자산의 재평가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자산손실을 억제토록 하였다.

株權確定에 관해서는 國有企業을 株式制로 전환할 때와 株式制企業을 신설할 때의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國有企業의 전자산을 株式制로 전환시에는 原企業의 국가 순자산을 國家株로 환산한다. 만약 資產(負債도 포함)의 일부만을 株式制企業으로 개조시킬 경우, 주식회사 순자산(자산-부채)만이 산정되는데 原國有企業 순자산이 50% 이상이면 이 부분이 주식으로 환산되어 國家株로 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순자산이 50% 이하이면 국가주가 아니라 國有法人株로 귀속된다. 만약 國有 法人團體(정부 산하 總公司 등)에서 소유(전부 또는 일부)하는 기업이 株式制企業으로 전환되면 당해 회사의 순자산이 國有法人株로 된다. 한편,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투자기구 혹은 부문이 株式制企業을 신설할 경우 모두 國家株가 된다. 그러나 만약 국유기업(업종별 독점 총공사 및 정부행정관리 기능적인 공사는 제외) 혹은 자회사들이 직접 신설한 주식회사에 투자할 경우에는 國有法人株로 된다.

(나) 株主의 權利行使 및 所有權 移轉

國家株權의 行使問題에 있어서도 國家株라 할지라도 주식제기업에서는 다른 주주와 마찬가지로 會社 設立, 清算, 增資 및 減資 결정에 참여하며, 회사의 정관 및 경영방향을 결정하고, 경영자의 任命, 進級, 賞罰, 이사회 초빙, 財務의 豫算決算의 결정 및 심사, 利益分配 및 所有權의 移轉 등 문제를 결정함으로써 기타 주주와 똑같이 주주권리를 행사하되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하여야 한다.

國家株 株權의 移轉問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의 권리 이전에 관한 법규로는 <주식회사 국가주 권리행사에 관한 잠정규정(株式有限公司國有股權管理暫行辦法)>이 있다. 이에 따르면 國家株의 양도는 投資構造 調整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國家株를 소유한 기관에 신청하여 移轉의 목적, 移轉收入의 용도, 移轉金額, 移轉對象, 移轉方式 및 條件, 移轉價格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 신청은 國家 國有資產管理局 및 省級 政府 국유자산 관리부문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는다. 移轉金額이 크거나 이전으로 인해 절대 지배주 혹은 상대 지배주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국가 국유자산관리국, 국가 경제개혁위원회 및 관련부문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非國有 資產管理部門의 株主로부터 國家株權으로 移轉될 경우 반드시 국유자산관리부문에 移轉金額, 移轉收入의 사용계획

및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國有株의 移轉方式에는 다음 3가지 方法이 있다.

첫째, 場外協議方式이다. 이는 양 교역당사자들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直接 場外에서 주권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株式을 양도하는 거래방식이다. 현재 중국에서 株權의 대량이전이나 國有株權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장외협의를 통해 이전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1995년 中國第一白動車集團公司가 상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金杯”白動車公司의 496백만주를 구매함으로써 “金杯”白動車公司의 51% 絶對支配權(控股權)을 取得하였는데 이것이 당시 중국에서 장외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가장 큰 株權移轉去來였다.

둘째, 株權의 相互交換方式이다. 이는 株權去來 당사자들이 각자가 所有한 一定金額의 株式을 상대방의 一定量의 주식과 교환하는 다소 특이한 교역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은 특별한 자금 수수없이 國有株의 상호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기업들간에 비교적 간단하게 주권이전을 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방식에 의한 주권이전은 1993년 深圳 투자관리공사에서 주식지분을 갖고 있는 “深圳市 物業株式有限公司”, “深圳 石油化學株式有限公司”, “深圳 深寶實業株式有限公司”의 3개 상장주식중 일부를 “中國平安保險公司”와 교환함으로써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深圳 투자관리공사는 상기 3개 기업의 주식지분비율을 낮추고, 보험, 금융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구조의 종합화를 꾀했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直接 流通市場(secondary market)에 進入하는 方法이 있다. 이는 증권거래시장에서 직접 국가주가 거래됨으로써 株式을 갖고 있는 단체 혹은 주주는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장 현실적이고도 이론적으로 합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국가주 소유자 혹은 기타 주주는 자금사정이 허락하는 한 대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식 수급을 조절하여 주식시장을 안정화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법이라 하겠다.

(다) 株式制 轉換 規制

정부가 국가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주식제로의 전환 혹은 일정비율 이상의 국가 이외의 지분참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電力企業이 외국기업과 합작할 경우 중국측의 주식지분이 70%이상 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처럼 특수 업종에 대한 주식제기업의 주주의 권리행사는 지분소유비율에 따라 絶對株主와 相對株主로 나뉘는데 전자는 국가주의 비율이 50%이상인 경우이고, 후자는 30% ~ 50%사이를 말한다. 어느 경우에도 최저 30% 미만일 수는 없다.

나. 株式合作制 轉換의 主要內容

(1) 株式合作制의 設立節次와 財産權 確定 問題

주식합작제는 새로 신설하거나 국유기업을 개조하여 설립하던간에 모두

工商行政管理 登錄機關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國有企業을 株式合作制企業으로 전환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준비팀을 구성하여 충분히 검토한후 株式合作制로의 전환 의향서를 제출하고 관련 정부부문과 협의한다.
- ② 정부부문의 비준을 받으면 行政管理部門에 등록절차를 밟는다.
- ③ 株式合作制로 전환하여 法人資格을 취득한 후 곧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감사회 등 최고관리기구를 설립한다.

國有企業를 株式合作制 企業으로 전환코자 할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산의 정리 및 평가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자산 정리는 관련 정부기구의 지도하에 전환기업이 진행하며, 자산평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구를 통해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된 자산액은 국유자산을 授權한 기구에서 인정하고, 종업원이 주식을 일정가격으로 구매하고 나머지 부분은 융자형식으로 임대함으로써 주식합작제 기업이 성립된다.

국유기업, 집체기업을 막론하고 주식합작제로 개조할 경우 원래 종업원의 보너스와 人件費 準備基金은 종업원소유로 확정된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는 다음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직접 주식합작제로 전환된 기업은 계속 종업원의 보너스 및 인건비로 지불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종업원의 個人所有로 하되 株式으로 換算하여 企業에 재투입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자산정리, 평가 및 소유권이 확정되면 이 결과를 주주총회에서 확정함으로써 주식합작제 기업 설립절차가 마무리된다.

(2) 株式合作制 전환시 株權의 設置問題

주식합작제 기업 株主는 貨幣로 출자할 수 있으며, 건축물, 기계설비 등 有形資產이나 공업소유권, 非特許技術, 토지사용권 등 無形資產을 주식으로 환산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단, 無形資產을 주식으로 환산하여 소유한 주식지분은 자본금의 20% 미만이어야 한다.

주식합작제기업의 종업원(臨時工은 포함하지 않음)는 정관에 따라 일정 수량의 주식을 구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株式購買할 수 있는 최저한도는 2,000~3,000元이며, 최고한도는 8,000元까지이다.

주식합작제 기업의 주식은 投資主體에 따라 從業員個人株, 從業員集體株, 法人株로 구성되어 있다. 주식합작제에는 國家株가 없는 것이 일반 주식제전환기업과의 커다란 특징이다.

주식합작제 기업은 普通株와 優先株를 발행할 수 있다. 優先株는 경영관리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종업원은 주식을 구매한 후 반환할 수 없으나, 사망, 퇴직 등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합작제 기업이 퇴직 종업원소유 지분을 구매한다. 주식합작제 기업은 종업원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며, 株券은 발행하지 않는다. 종업원은 재직기간중에는 출자증명서를 양도, 이전할 수 없으나, 특별한 경우 정관에 다른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株主總會의 동의를 거쳐 一部 株式(기본 출자액을 초과한 부분)을 이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주식합작제기업에서 구매하여 기타 종업원 및 신입 종업원에게 재배분할 수 있다.

(3) 株式合作制의 分配制度

株式合作制 기업의 이익분배는 勞動에 따른 分配와 株式에 의한 利益分配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기업의 재무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재무보고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투자가를 보호함과 동시에 세수의 안정확보를 기할 목적으로 1992년 12월 제정된 <企業財務通則>에 따르면 주식합작제 기업은 所得稅를 납부하여야 하며, 納稅후 이익 처분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배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① 과년도 결손금을 補填한다.
- ② 法定準備金を 적립한다. 법정준비금의 유보율은 세후순이익의 10%이며,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③ 종업원의 집단복리시설에 사용될 公益金を 적립한다.
- ④ 규정된 배당비율에 따라 優先株에 대한 배당금을 지불한다.
- ⑤ 任意準備金を 적립한다.
- ⑥ 普通株에 대한 배당금을 지불한다.

(4) 株式合作制 企業의 組織體制

株式合作制 기업의 조직체계는 크게 株主總會, 理事會, 監査會가 있어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조직체계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株主總會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이사회는 주식합작제기업의 常設機構이며, 주주총회 폐회기간의 일반 사무를 담당한다. 이사회의 인원구성, 선정방법 및 직무범위 등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그리고 감사회는 이사회 및 기업의 경영관리인원에 대하여 감독하며,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總經理(社長)은 이사회에서 초빙하거나 株主總會에서 選出하며, 기업의 일상경영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4. 準民營化的 成果 및 限界

(가) 準民營化的 成果

중국이 그동안 국유기업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株式制 위주의 민영화제도(혹은 準民營化 制度)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企業財產權 確立, 所有와 經營의 분리, 종업원 생산성 향상, 기업 활성화 및 효율화 진전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국유기업의 株式制改革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국가와 기업간의 利潤分配 관계에서 한단계 나아가 중소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소유권의 일부 민간이양이 진행되었다는 차원에서 準民營化 改革이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8월 25일자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紙는 중국은 50여만 개의 지방 중소형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改革(準民營化)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승인아래 국유 地方 中小企業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1998년까지 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準民營化 改革作業은 福建, 山東, 江蘇, 廣東, 湖北, 湖南, 黑龍江, 四川省 등 전국적으로 각각 지방

실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데 山東省의 경우 대상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이미 구조 조정작업을 마쳤으며, 安徽省도 40%이상 경영 개편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山東省 諸城市에서는 국유 중소기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해 종업원들에게 지분을 배분했고, 廣東省 順德市의 일부기업은 주식의 상당부분을 현지인 뿐만 아니라 홍콩인과 外國人들에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미 중소기업에 대한 準民營化 改革은 상당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유기업의 민영화 노력은 이미 언급한 것 처럼 중소형기업에 치우쳤던 바 중국 산업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대형 국유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면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근간으로 삼을 公有制 개념이 퇴색되는 한편, 대량 실업사태가 유발되는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주식제 개혁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나) 準民營化의 限界

그동안 國有企業改革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주식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유기업의 준민영화 작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株式制企業으로의 전환은 관련 정부기관의 직접적인 통제 및 보호로부터 독립시킨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을 평가, 심사하는 國有資產管理局와 國有投資公司 또한 역시 정부기관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主管機關으로 등장하여 여전히 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을 유지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資本市場의 발달이 미약한 중국에서 國有企業의 資產價値를 적절하게 評價하여 株式으로 換算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자산의 低評價 현상과 기업이 임의로 주식배당을 조작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다.

셋째, 株式制 改革은 아직 실험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 많은 주식제 기업이 명목상 주식회사의 이름을 쓰고 있으나, 실제로 과거의 行政指導者들이 公司의 理事長, 總經理(사장)등으로 바뀌었을 뿐 經營方式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넷째, 국영기업의 賃貸經營 및 賣却 등 본격적인 民營化 方法은 中小型 國有企業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大型 國有企業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채택되지 않았다.

다섯째, 중국 주식제 개혁에 있어서 國家株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여전히 社會主義的 要素가 남아있다. 따라서 단순히 주식제를 실시하여 국유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주식제 관련 專門人力이 不足하여 주식제 기업에 있어서 指導體制, 運營方法, 管理制度 등에 대하여 規範化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5. 맺 음 말

世界 主要國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을 보면 先進國의 민영화정책이 개도국에서의 민영화보다 적극적이고 성공적이었다⁸⁾. 先進國에서 추진되어 온 公企業의 民營化 목적은 財政赤字의 축소보다도 公企業의 비효율성 제거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즉 민영화 이전 공기업만이 수행하던 기능을 민간기업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政府는 공공부문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문에 집중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분적인 경영 자주성의 부여, 競爭原理의 導入, 서비스 질의 개선등의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가져다 준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진국 민영화의 事例는 향후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 방안 수립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中國 국유기업의 민영화문제는 근본적으로 經濟的 合理性보다는 政治的 理念에 크게 좌우되었기 때문에 중국 國有企業의 準民營化 改革과 資本主義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公企業의 民營化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비록 企業經營의 效率性 向上의 目的, 그리고 주식발행 및 민간부문으로의 株式 分散 등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주로 공익사업부문에 한정되어 예외적으로 존재해 왔던 공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그 경제체제의 성격까지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中國의 國有企業 株式制 改革은 公有制의 主體的 地位의 維持와 관련된 經濟體制 全體에 걸친 문제이다. 만약 中大型 國有企業에 대한 주식제 개혁이 일반화될 경우 效率化 進전을 위한 다음 단계로서 全面的 民營化로 이어질 可能性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꿔말하면 이제 중국은 그동안 견지해 온 ‘公有制 原則’이 와해되지 않을까 의구심을 가져보며, 결국 이는 중국 社會主義經濟體制의 붕괴 및 자본주의 국가로의 전환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동안 중국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혁은 中小 國有企業에 한정되어 왔지만 지난 ‘15全大’에서 江澤民 總書記가 향후 주식제 개혁의 중심대상은 대형 국유기업이라고 밝힌 바처럼 이제는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주식제 개혁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진출을 피하는 한국기업들로서는 신규공장설립에 의한 투자진출에서 중대형 우량국유기업을 매수 혹은 합병을 통해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과 내수시장 진출시 외자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투자진출 전략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끝.

8) 姜信逸, <公企業의 民營化에 관한 研究>, KDI. 1988

參 考 文 獻

<韓國文獻>

1. 姜信逸, “公企業 民營化에 관한 研究”, KDI. 1988
2. 황준성, “독일의 公企業 民營化”, 韓國經濟研究院, 규제연구시리즈
3. 金時中,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2
4. 趙顯垞, “中國, 國有企業 民營化의 展開와 展望”, 1996.12

<中國文獻>

5. 夏大慰외, “現代企業制度實用大全”, 復旦大學出版社, 1994.12.
6. 烏 杰, “現代企業制度操作指南”, 改革出版社, 1995.7
7. 劉國光외, “1997年中國經濟形勢分析與豫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12.
8. 汪廷忠외 1. “關於國有民營若干問題的思考”, <學習與實踐>, 武漢, 1993.11.
9. 金忠義, “論國有民營產生的必然性及基本特徵”, <工業企業管理>,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94.1.
10. 湯正鋼, “論競爭性國有企業民營化的大趨勢”, <學習與實踐>, 1993.11.
11. 施建國, “關於國有民營模式的初探”, <企業經濟>, 1993.8.